

# 建築士를 위한 設備講座 改正 消防法 解説

李 承 九 - 중앙소방설비(주) 대표(본회설비분과위원회위원)

現代 經濟의 急成長은 物질문명의 발달과 함께 기계공학, 화공학, 전기공학 등의 눈부신 변화를 가져 왔으며 보다 넓어지고 빨라진 인간들의 행동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건축공학의 발전은 건물의 대형화와 더불어 기능적인 면과 안전에 더욱 치중하게 되었다.

構造的(Building construction)인 욕구에 의하여 現代 建物の 대부분이 耐火構造로 建築되며, 면적에 따른 방화구획의 설정이나 비상 계단의 설치 등은 화재의 위험을 감소 시키게 되고 또한 발전된 消防工学(Fire protection engineering)은 화재진압(Fire fighting)에서 예방(Fire prevention)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날로 새로워지는 消防技術은 消防法の 改正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관계당국에서 수개월을 연구 검토한 결과 법률 제3413호(81. 4. 4) 소방법의 개정 대통령령 제10619호(81. 11. 6)로 소방법 시행령의 개정, 내무부령 제374호(82. 6. 5)로 소방법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一次의인 完成을 보게 되었다.

本 改正된 消防法에 대하여 適正 여부나 技術的인 검토를 論하기 보다는 建築人으로서의 理解와 필요한 點만을 記述하고자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축업무상 불필요한 사항과 구법조문을 생략하기로 한다)

## 1. 特 徵

### ㄱ. 消防施設의 緩和

消防施設은 人命과 財産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항상 건물주에게 이익을 초래하게 하지 않으면 화재의 발생이 없을 때에는 사용치 않을뿐만 아니라 매년 수리비가 요구되는 실정임으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고 또한 건축물의 구조가 내화구조로 됨에 따라 화재 발생 요인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소방시설의 설치의무규정을 2배내지 3배 완화 실시하고 있다.

### ㄴ. 罰則의 強化

소방법위반 사항에 대한 벌과금 규정을 종래의 10만원 을 100만원으로, 5 만원을 50만원으로, 3 만원을 30만원으로 하는 등 강화 하였다.

### ㄷ. 소방 대상물의 구분

소방 대상물의 구분을 별표 1의 1항에서 20항으로 세분 하던것을 1종장소, 2종장소, 3종장소 및 지정문화재·지하가·복합 건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것은 화재하중(火災荷重)을 고려하여 제반소방시설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명칭 또한 학교·여관 등의 호칭으로 하여 일반인들의 이해가 쉽게 한 것이다.

ㄹ. 구법 과 동시 사용하여야 한다.

現 消防法 施行令이나 施行規則에서는 소방시설의 설치대상물만을 정하였으며, 제반 기술적인 규정은 삭제되었다.

따라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기준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은 이에 관한 내무부령이 별도 제정되어 시행할때까지 종전규정에 의함으로 구법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2. 소방법 개정사항중 주요내용

제9조(建築許可 등의 同意) ① 建築物의 新築·增築·改築·移轉·대수선 및 構造 또는 用途變更의 許可(建築法 第8條 및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承認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確認의 權限을 가진 行政庁 또는 그 委任을 받은 者는 그 許可 또는 確認에 있어서 미리 당해 建築物의 工事 施工地 또는 所在地를 管轄하는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許可 또는 確認을 할 수 없다. (改正 81. 4. 4 法3413)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에 대한 同意에 있어서는 第3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完工檢査畢證을 交付함으로써 同意에 같음한다. 이 경우 市長 또는 郡守는 完工檢査畢證을 確認하여야 한다. (新設 81. 4. 4 法3413)

① ( ) 부분이 삽입됨으로 건축허가시의 동의 범위가 추가되었으며  
④ 구법에는 소방시설의 완공 검사규정이 없었으나 신법에는 추가함으로 법적근거가 확립됨.

제11조(共同防火管理) ① 高層建築物(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建築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消防對象物로서 그 管理의 權原이 分離되어 있는 것. 또는 地下街(地下의 工作物안에 設置된 店鋪·事務室 기타 이와 類似한 施設로서 連續하여 地下道에 面하여 設置된 것과 당해 地下道를 呑한 것을 말한다.) 로써 그 管理의 權原이 分離된 것 중에서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이 指定하는 것에 대한 管理의 權原이 있는 者는 第1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計劃의 作成 기타 防火管理上 必要한 事項을 內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協議하여 미리 정하여야 한다. (改正 81. 4. 4 法3413)

① 구법에는 15미터이었으나 31미터로 공동방화관리의 의무 건축물을 대폭 완화

제12조(特殊場所의 防災) ① 高層建築物(共同住宅을 제외한다) 劇場·카바레·호텔·病院 등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정하는 消防対象物에서 使用하는 카텐·실내장식물·전시용합판 기타 이와 類似한 物品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은 防炎性能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크라設備·물噴霧消火設備 또는 泡沫消火設備로서 自動式인 消火設備가 設置된 消防対象物에서 使用하는 物品은 該하지 아니하다. <改正, 但書新設 81. 4. 4 法3413>

① 방염 대상물중 학교·공동주택·시장·공장·백화점·도서관·지하가가 제외되었으며 자동소화 설비가 설치된 소방 대상물도 제외함으로 대폭 완화됨.

**제29조(特殊場所 등의 消防施設) ① 特殊場所의 關係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消火設備·警報設備·避難設備·消火用水設備 기타 消火活動上 必要한 設備(이하 “消防施設”이라 한다)를 內務部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設置하고 維持하여야 한다. <改正 81. 4. 4 法3413>**

① 소방시설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내무부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이 용이하게 됨.

**제29조의 2(消防施設基準 적용의 特例) 第29條 第1項의 消防施設의 基準에 관한 大統領令 또는 內務部令의 變更으로 그 基準이 強化된 경우에는 기존 特殊場所(建築物의 新築·増築·改築·移轉·大修繕 등의 工事중인 特殊場所를 포함한다)의 消防施設(消火器具·警報設備 및 避難設備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基準을 적용한다. <本條 신설 81. 4. 4 法3413>**

소방법 개정에 따른 빈번한 시설 변경을 방지하기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허가를 득하여 공사중인 건물도 해당된다.

**제32조(消防施設의 施工申告등) ① 第16條 第1項 및 第2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를 하고자 하는 者는 內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消防施設의 種類·施工場所 기타 必要한 事項을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를 完了한 者는 內務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의 完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③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完工檢査結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적합한 때에는 內務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完工檢査畢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81. 4. 4 法3413>

① 소방시설의 시공을 할 때는 10일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또 완공시에도 검사후 필증을 교부 받아 건축 준공검사에 임하게 된다. 소방업자의 임무지만 감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78조(罰 則) 第10條 第3項·第15條 第3項·第18條 第5項 또는 第3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怠慢히 하거나 第3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完工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는 5萬圓 以下の 罰金 또는 拘留에 處한다. <改正 81. 4. 4 法3413>**

제32조제1항에 의한 신고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의 벌칙이다.

### 3. 소방법 시행령 중 주요내용

**제2조(定 義)** 이 令에서 使用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바닥面積”이라 함은 建築法施行令 第3條 第1項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面積을 말한다.
2. “延面積”이라 함은 建築法 施行令 第3條 第1項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面積을 말한다.
3. “地下層”이라 함은 建築法 第2條 第5號의 規定에 의한 地下層을 말한다.
4. “無窓層”이라 함은 地上層中 內務部令으로 定하는 避難 또는 消火活動을 함에 있어 有效한 開口部가 없는 層을 말한다.
5. “避難層”이라 함은 直接 地上에 통하는 出入口가 있는 層을 말한다.
6. “主要構造部”라 함은 建築法 第2條 第7號의 規定에 의한 主要構造部를 말한다.
7. “耐火構造”라 함은 建築法 第2條 第9號의 規定에 의한 耐火構造를 말한다.
8. “防火構造”라 함은 建築法 第2條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防火構造를 말한다.
9. “不燃材料”라 함은 建築法 第2條 第11號의 規定에 의한 不燃材料를 말한다.
10. “準不燃材料”라 함은 建築法 施行令 第2條 第9號의 規定에 의한 準不燃材料를 말한다.
11. “難燃材料”라 함은 建築法 施行令 第2條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難燃材料를 말한다.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는 용어를 건축법에 위임함으로써 책임의 한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해석상의 통일을 기한 것이다.

**제4조(建築許可等の 同意對象物의 範圍) ① 法 第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等の 同意對象物의 範圍는 建築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야 할 建築物中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것으로 한다.**

1. 別表 1의 特殊場所中 다음의 場所

가. 公演場·競技場·集會場·飲食場·유기장·旅館 호텔·旅人宿·寄宿舍·醫療院·老人福祉施設·兒童福祉施設·心神障礙者 福祉施設·유치원 및 地下街로서 延面積 600平方미터以上인 것. 다만, 地下層 또는 無窓層의 경우에는 그 層의 바닥面積이 300平方미터 以上인 것.

나. 市場·4層以上 共同住宅·停車場·待合室·學校學芸展示館·公衆沐浴場·工場·映画 및 텔레비전 촬영소·倉庫·車庫 및 駐車場으로서 延面積 1천平方미터 以上인 것. 다만, 地下層 또는 無窓層의 경우에는 그 層의 바닥面積이 600平方미터 以上인 것. 다. 教會·寺刹 및 事業場으로서 延面積 1천 800平方미터 以上인 것. 다만, 地下層 또는 無窓層의 경우에는 그 層의 바닥面積이 600平方미터 以上인 것.

라. 비행기 格納庫

① 同意 대상물이 대폭 완화 되었다.

3층이하의 공동주택이 제외되었으며 가 항의 경우 2배, 나 항의 경우 5배 정도 완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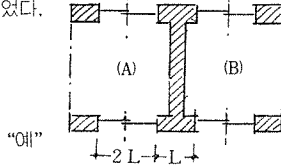
**제14조(消防対象物의 完全区劃区分)** 耐火構造의 消防対象物로서 開口部가 없는 耐火構造의 바닥 또는 壁으로 区劃되어 있는 部分은 이 章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各各 別個의 消防対象物로 본다.

※ 구법참조

제13조(消防対象物の完全区劃区分) 耐火構造の消防対象物로서開口部が 없는 바닥 또는 壁으로区劃되어 있고 그区劃된以外の場所로延焼할 우려가 없는部分은 이節의規定을適用함에 있어서各各別個の消防対象物로 본다.

구법에는 완전 구획되었으며 인접된 장소로延焼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고 하였으나 이 부분이 삭제됨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하면 별도로 적용을 받게 되었다.

○구법에서는 1개의 건물이나 신법에서는 (A) (B) 건물로 간주한다.



제15조(消防対象物の用途別区分) 別表1의複合建築物은 이章(第21條 및 第22條를除外한다)의規定을適用함에 있어서 그用途로各各1個의消防対象物로 본다. 다만, 다음各号의消防対象物은除外한다.

1. 延面積 1천 평방미터 이상인建築物
2. 地下層·無窓層 또는 3層以上の層의 바닥面積이 300平方미터 이상인建築物

대형건물은 주요용도로 준한다고 사료되나 소방기술상으로는 적용이 곤란한 항목이다.

제16조(地下街의擬制) 別表1의第1種場所(老人福祉施設·兒童福祉施設·心神障礙者福祉施設·유치원 및 공중목욕장을除外한다)의地下層이地下街와連結되어 있는 경우当該地下層의부분은 이章의消防施設(消防器具를除外한다)을適用함에 있어서 이를地下街로 본다.

지하가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의 적용이 강화되어 있다.

第2節 消防施設을設置하여야 할消防対象物

제17조(第1種場所) 別表1의第1種場所로서消防施設을設置하여야 할消防対象物은 다음과 같다.

1. 消火機具를設置하여야 할消防対象物

가. 延面積 150平方미터 이상(飲食店의 경우에는 33平方미터 이상)인 것.

나. 가目に該當하지 아니하는消防対象物로서別表2에서定하는數量의 5분의 1以上の危險物, 別表3에서定하는數量以上の準危險物, 別表4에서定하는數量以上の特殊可燃物 또는 高圧가스安全管理法에서規定하는高圧가스중 40킬로그램以上の可燃性가스를貯藏·取扱하는 것.

다. 가目 및 나目に該當하지 아니하는消防対象物의地下層·無窓層 또는 3層以上の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50平方미터 이상인 것.

- 1종장소: 공연장·경기장·집회장·음식점·시장·여관·호텔·여인숙·기숙사·의료원·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심신장애자 복지시설·유치원·공중목욕탕

1. 소화 기구의 경우 구법에는 건축물의 내화성과 타 소방설비와의 조 건등을 참조하여 설치개수를 감면하였으나 신법에는 유사한 조항이 없다.

2. 屋内消火栓設備를設置하여야 할消防対象物

가. 延面積 2천 100平方미터 이상(公演場·競技場 集會場의 경우에는 1천 500平方미터以上)인 것.

나. 가目に該當하지 아니하는消防対象物로서別表3에서定하는數量의 750倍以上の第1類·제2류 또는 제5류의準危險物이나別表4에서定하는數量의 750倍以上の特殊可燃物을貯藏·取扱하는 것. 가目 및 나目に該當하지 아니하는消防対象物의地下層·無窓層 또는 4層以上の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450平方미터以上(公演場·競技場·集會場의 경우에는 300平方미터以上)인 것.

2. 옥내 소화전의 설치 대상물이 내화구조인 경우 3배의 면적을 적용하던 것을 신법에서는 조건없이 함으로 비내화 건물은 완화이나 내화구조건물은 종전과 동일한 적용이다.

3. 스프링클러設備를設置하여야 할消防対象物

가. 公演場 또는 集會場으로서舞臺部(舞臺에附設된裝置物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바닥面積이当該舞臺部가地下層·無窓層 또는 4層以上の層에 있는境遇에는 300平方미터以上, 其他의層에 있는境遇에는 500平方미터 이상인 것.

나. 市場으로서販賣場의 바닥面積의合計가 4層以下の建築物에 있어서는 9천平方미터以上, 5層以上の建築物에 있어서는 6천平方미터以上인 것.

다. 가目 및 나目に該當하지 아니하는消防対象物로서別表3에서定하는數量의 1천倍以上の第1類·第2類 또는 第5類의準危險物이나別表4에서定하는數量의 1천倍以上の特殊可燃物을貯藏·取扱하는 것.

라. 가目 내지 다目に該當하지 아니하는消防対象物(公演場·競技場·集會場 및 寄宿舍를除外한다)의地下層·無窓層 또는 4層以上 10層以下の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1천500平方미터 이상인 것.

마. 가目 내지 다目に該當하지 아니하는消防対象物(旅館·호텔 또는 旅人宿에 한한다)의 11層以上の部分

바. 가目 내지 다目に該當하지 아니하는消防対象物(旅館·호텔 및 旅人宿을除外한다)의 11層以上の部分으로서建築法施行令第96條第1項第3号의規定에 의하여防火区劃된以外の部分의 바닥面積合計가 100平方미터以上(그層의壁 및 반자의室内에面하는部分의 마감을準不燃材料로 한 경우에는 200平方미터以上, 不燃材料로 한 경우에는 500平方미터以上)인 것.

- 3라. 항의 경우 구법에는 시장으로 면적 1000㎡이면 해당되었으나 삭제되었으며 여관·호텔·음식점·병원·등의 경우에만 해당되었으나 신법에서는 폭넓게 강화 되었다.

마. 마항의 여관·호텔의 경우 11층 건물이면 스프링클러 설비 해당

5. 물噴霧等 消火設備를設置하여야 할消防対象物

가. 別表3에서定하는數量의 1천倍以上の第1類·第2類·第4類 또는 第5類의準危險物이나別表4에서定하는數量의 1천배以上の特殊可燃物을貯藏·取扱하는 것.

- 나. 消防対象物에 設置된 發電室 및 變電室로서 그 바닥面積이 300平方미터 以上인 것.
4. 나항의 경우 보이라실이 배제되고 면적이 200㎡에서 300㎡로 됨. 해당되는 설비의 종류는 물분무 소화설비·포말소화설비·이산화탄소 소화설비·히로겐 화물 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등이다.
5. 屋外消火栓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바닥面積(地下層을 除外한 層수가 1層인 경우에는 1 層의 바닥面積을, 地下層을 除外한 層수가 2層以上 인 경우에는 1層 및 2層의 바닥面積의 合計를 말한다)이 9천平方미터이상인 建築物. 이 경우 同一대 지안에 耐火構造建築物·防火構造建築物 以外の 建築物이 2以上이 있는 경우에 当該 建築物의 外壁 相互間의 中心線으로부터 水平距離가 1層에 있어서는 3 미터以下, 2層에 있어서는 5미터 以下인 것은 이를 1個의 建築物로 본다.
6. 動力消防펌프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第2号 各目的 消防対象物 또는 그 部分  
나. 第5号의 建築物
7. 自動火災探知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延面積 600平方미터以上(市場 및 公衆沐浴場의 경우에는 1천平方미터以上)인 것.  
나. 가目に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로서 別表 3에서 定하는 數量의 500倍 以上の 準危險物 또는 別表 4에서 定하는 數量의 500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다. 가目 및 나目に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의 地下層·無窓層 또는 3層以上の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300平方미터以上(市場 및 公衆沐浴場의 경우에는 600平方미터以上)인 것.  
라. 消防対象物의 通信機器室로서 그 바닥面積이 500 平方미터以上인 것.
7. 공연장이나 식당인 경우 구법에서는 500㎡이나 내화구조인 경우 1000㎡이므로 강화되었고 시장이나 공중 목욕탕의 경우에도 내화구조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다.
8. 電氣火災警報機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다음 各目的의 消防対象物(耐火構造建築物을 除外한다)로서 壁·바닥 또는 반자의 全部 또는 一部를 不燃材料나 準不燃材料가 아닌 材料에 철망을 넣어 만든 構造의 것.  
가. 延面積 300平方미터 以上인 것.  
나. 契約電流容量(同一建築物에 契約種別이 다른 電氣가 供給되는 경우에는 그 中 最大契約電流容量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암페어를 超過하는 것.
8. 전기 화재경보기의 설치대상은 비내화구조의 건물에만 적용되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9. 自動火災速報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市場·旅館·호텔·여인숙 및 醫院으로서 바닥面積 1천 500平方미터以上인 것
10. 非常警報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放送設備 및 非常벨 또는 放送設備 및 自動式사이렌  
地下層을 除外한 層수가 11層以上이거나 地下層의

層수가 3層以上 또는 收容人員이 800人以上(旅館·호텔·旅人宿·醫院·老人福祉施設·兒童福祉施設·心神障礙者福祉施設 및 유치원의 경우에는 300人以上)인 것.

나. 비상벨·自動式사이렌 또는 放送設備  
가目に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로서 收容人員이 100인 以上(旅館·호텔·旅人宿·醫院의 경우와 地下層 또는 無窓層이 있는 경우에는 40人以上)인 것.

10. 나항의 경우 50인을 100인으로 20인을 40인으로 완화

11. 避難器具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避難層 및 11層 以上の 層을 除外한 層 (主要構造部를 耐火化構造로 한 建築物에 있어서는 2層을 除外한다. 以下 같다) 으로서 다음 各目的의 것.

가. 醫院·老人福祉施設·兒童福祉施設·心神障礙者福祉施設 및 유치원의 경우에는 收容人員이 20人以上인 것.

나. 旅館·호텔·旅人宿 및 寄宿舍의 경우에는 收容人員이 30人 以上인 것.

다. 公演場·競技場·集會場·飲食店·유기장 및 市場의 경우에는 收容人員이 50人以上인 것.

11. 제외되는 층이 18층 이상에서 11층 이상으로 사실화 하였으며 수용 인원 산정도 그 배수로 하였다.

12. 人命救助裝具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地下層을 除外한 層수가 7層以上 觀光호텔로서 收容人員이 200人 以上인 것.

나. 地下層을 除外한 層수가 5層以上인 病院으로서 收容人員이 200인 以上인 것.

13. 避難口誘導燈·通路誘導燈·客席誘導燈 및 誘導標識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구 분	지하층·무창층 또는 11층이상의 층	기타의 층
용도별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유도표시
숙사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	
공연장·경기장·집회장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	
음식점·유기장·시장·여관·호텔·여인숙·의료원·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심신장애자복지시설·유치원·공중목욕장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14. 消火用水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가. 垜地面積이 2萬平方미터以上인 建築物로서, 그 바닥面積(地下層을 除外한 層수가 1層인 경우에는 1層의 바닥面積을, 地下層을 除外한 層수가 2層 以上인 경우에는 1층 및 2層의 바닥面積의 合計를 말한다)이 1萬 5千平方미터以上인 建築物. 이 경우 同一 垜地안에 2以上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 当該 建築物의 外壁 相互間의 中心線으로 부터 水平距離가 1層에 있어서는 3미터 以下, 2層에

있어서는 5 미터以下인 것은 이를 1個의建築物로 본다.

나. 높이가 31미터以上인建築物로서延面積(地下層을除外한다)이 2萬5千平方미터以上인 것.

14. 내화 건축물의 경우 1500㎡ 준내화 1000㎡ 비내화 500㎡ 이던 것을 통일하여 1500㎡로 함.

15. 排煙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公演場 또는 集會場으로서 舞臺部의 바닥面積이 200平方미터 以上인 것.

나. 飲食店·유기장·市場·旅館·호텔 또는 旅人宿으로서 地下層 또는 無窓層의 바닥面積이 1천平方미터以上인 것.

15. 나향중 카바레·비어홀을 배제하여 주었다.

16. 連結送水管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地下層을 除外한 層수가 7層 以上인 것. 다만, 屋內消火栓設備가 設置되고 바닥面積이 150平方미터以下로서 10層以下인建築物은 除外한다.

나. 地下層을 除外한 層수가 5層以上인 것으로서 延面積 6千平方미터以上인 것.

16. 아케이트나 지하가 등이 삭제되었다.

17. 連結撒水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地下層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700平方미터以上인 것. 다만, 主要構造部가 耐火構造인 경우에는 다음 각目の 部分의 바닥面積은 이를 當該 基準面積에서 除外한다.

가. 耐火構造의 壁·바닥 또는 自動閉鎖裝置를 한 甲種防火門 또는 乙種 防火門으로 區劃된 部分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50平方미터 以下인 部分

나. 浴室·변소 其他 이와 類似한 用途에 使用되는 部分

다. 耐火構造의 壁·바닥 또는 自動閉鎖裝置를 한 甲種防火門으로 區劃된 部分에 位置하는·昇降機 및 換氣設備의 機械室·通信機器室·電子計算機器室·其他 이와 類似한 用途로 使用되는 部分

라. 發電室·變圧室 其他 이와 類似한 電氣設備가 설치되어 있는 部分

마. 昇降機의 昇降路·린넨슈우트·파이프다트 其他 이와 類似한 用途에 使用되는 部分

바. 보일러室 其他 이와 類似한 設備가 設置된 部分

17. 연결설수헤드의 설치가 면제 되는 장소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함으로 사실상 완화 되었다.

18. 非常콘센트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地下層을 除外한 層수가 11層以上인 것.

제18조(第2種場所) 別表 1의 第2種場所로서 消防施設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은 다음과 같다.

1. 消火器具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延面積 300平方미터以上(4層以上의 共同住宅·工場·映画 및 텔레비전 촬영소의 경우에는 150平方미터以上)인 것.

나. 가目に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別表 2에서 定하는 數量의 5分の 1以上의 危險物, 別表 3에서 定하는 數量以上의 準危險物, 別表4에서

定하는 數量以上의 特殊可燃物 또는 高圧가스安全管理法에서 規定하는 高圧가스중 40킬로그램 以上의 可燃가스를 貯藏·取扱하는 것.

다. 가目 및 나目に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의 地下層·無窓層 또는 3層以上의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50平方미터 이상인 것.

2중장소: 정거장·대합실·교회·사찰·아파트·학교·학예전시관·사업장(관공서·회사·은행·이발소·화장장·오물처리장) 공장·촬영소

1. 구법의 내용과 동일하다.

2. 屋內消火栓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延面積 2천100平方미터以上(教会·寺刹의 경우에는 3千平方미터以上)인 것.

나. 가目に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別表 3에서 定하는 數量의 750倍以上의 第1類·第2類 또는 第5類의 準危險物이나 別表 4에서 定하는 數量의 750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다. 가目 및 나目に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의 地下層·無窓層 또는 4層以上의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450平方미터 以上(教会·寺刹의 경우에는 600平方미터以上)인 것.

2. 모든 건물을 내화 건물로 간주하여 면적을 정한 것으로 구법과 동일하다.

3. 스프링클러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別表 3에서 定하는 數量의 1천倍以上의 第1類·第2類 또는 第5類의 準危險物이나 別表 4에서 定하는 數量의 1천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나. 가目に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事業場에 한한다)의 地下層·無窓層 또는 4層以上 10層以下의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1千500平方미터 以上인 것.

다. 가目に 해당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事業場, 映画 및 텔레비전촬영소에 한한다) 11層以上의 部分으로서 建築法施行令 第96條 第1項 第3号의 規定에 의하여 防火區劃된 以外の 部分의 바닥面積 合計가 100平方미터以上(그 層의 壁 및 반자의 室内에 면하는 部分의 마감을 準不燃材料로 한 경우에는 200平方미터 以上, 不燃材料로 한 경우에는 500平方미터以上)인 것.

3. 구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문장구성을 알기쉽게 작성 되었다.

4. 動力消防펌프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第2号 各目に 掲記하는 消防對象物 또는 그 部分

나. 第17條 第5号의 基準에 該當하는 建築物

5. 自動火災探知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延面積 1千平方미터以上(教会·寺刹 및 事業場의 경우에는 2千平方미터以上)인 것.

나. 가目に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別表 3에서 定하는 數量의 500倍以上의 準危險物 또는 別表 4에서 定하는 數量의 500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 다. 가目 및 나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의 地下層·無窓層 또는 3層以上の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600平方미터 以上인 것.
- 라. 消防對象物의 通信機器室로서 그 바닥面積이 500平方미터 以上인 것.
5. 이 경우에도 내화구조의 수치를 적용 하였으나 통신 기기실의 바닥면적 500㎡는 그대로 둔 것은 위험을 고려한 것 같다.
6. 電氣火災警報機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다음 各目에 揭記하는 消防對象物(耐火構造建築物을 除外한다)로서 壁·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 不燃材料나 準不燃材料가 아닌 材料에 鐵網을 넣어 만든 構造의 것.  
가. 延面積 500平方미터以上(事業場의 경우에는 1千平方미터以上)인 것.  
나. 契約電流用量이 100암페어를 超過하는 것(4層以上의 共同住宅 및 事業場에 한한다)
7. 自動火災速報設備을 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工場, 映画 및 텔레비전촬영소로서 바닥面積이 1천 500平方 미터 以上인 것.
8. 非常警報設備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放送設備 및 非常벨 또는 放送設備 및 自動式싸이렌  
(1) 地下層을 除外한 層數가 11層以上이거나 地下層의 層數가 3層以上인 것.  
(2) 學校·學芸展示館으로서 收容人員이 800人以上인 것.  
나. 非常벨·自動式싸이렌 또는 放送設備  
가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收容人員이 100인 以上(地下層 또는 無窓層이 있는 경우에는 40人以上)인 것.
8. 가항의 경우에는 방송설비와 함께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나항의 경우에는 3개설비중 1개를 설치하면 된다.
9. 避難器具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避難層 및 11層以上の 層을 除外한 層으로서 다음 各目에 揭記하는 것.  
가. 4層以上の 共同住宅의 경우에는 收容人員이 30人 以上인 것.  
나. 정거장, 待合室, 教会, 寺刹 및 學芸展示館의 경우에는 收容人員이 50人 以上인 것.  
다. 學校, 工場, 映画 및 텔레비전촬영소 및 事業場의 경우에는 收容人員이 150人 以上(地下層·無窓層이 있는 경우에는 100人以上)인 것.
10. 避難口誘導燈·通路誘導燈 및 誘導標識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11. 排煙設備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정거장·待合室로서 地下層 또는 無窓層의 바닥面積이 1千平方미터以上인 것.
12. 물噴霧等消火設備, 屋外消火栓設備, 消火用水設備, 連結送水管設備, 連結撒水設備 및 非常콘센트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에 관하여는 第17條 第4号, 第5号, 第14号, 第16号 내지 第18号의 規定을 各各 準用한다.

3종장소: 창고, 차고, 비행기 격납고

제19조(第3種場所) 別表 1의 第3種場所로서 消防施設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은 다음과 같다.

1. 消火機具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延面積 150平方미터以上인 것.  
나. 가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別表 2에서 定하는 數量의 5分の 1 以上の 危險物, 別表 3에서 定하는 數量以上의 準危險物, 別表 4에서 定하는 數量以上의 特殊可燃物 또는 高压가스 安全管理法에서 規定하는 高压가스 中 40킬로그램 以上の 可燃性가스를 貯藏·取扱하는 것.
- 다. 가目 및 나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의 地下層·무창층 또는 3層以上の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50平方미터 以上인 것.
2. 屋内消火栓設備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倉庫로서 延面積 2千100平方미터 以上인 것.  
나. 가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別表 3에서 定하는 數量의 750倍以上의 第1類, 第2類 또는 第5類의 準危險物이나 別表 4에서 定하는 數量의 750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다. 가目 및 나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倉庫의 地下層·無窓層 또는 4層以上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450平方미터以上인 것.
2. 창고의 경우에는 절골트러스 건물인 경우 내화구조가 아니므로 3배의 완화효과를 보게 되었다.
3. 스프링클러設備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屋內에 面하는 部分)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락크식倉庫(선반 또는 이와 類似한 것을 設置하고, 昇降機에 의하여 수납물을 運搬하는 裝置를 갖춘 倉庫를 말한다)로서 延面積 2千100平方미터 以上인 것.  
나. 가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別表 3에서 定하는 數量의 1천倍以上의 第1類·第2類 또는 第5類의 準危險物이나 別表 4에서 定하는 數量의 1천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3. 락크식 창고의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설비의 의무규정을 2100㎡로 완화하였다.
4. 물噴霧等消火設備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車庫 또는 駐車場의 層(駐車한 諸車가 同時에 나올 수 있는 構造의 層을 除外한다)으로서 駐車의 用途에 使用되는 部分의 바닥面積이, 地下層 또는 2層以上の 層에 있어서는 200平方미터以上, 1層에 있어서는 500平方미터以上인 것.

용도별	구분	
	지하층·무창층 또는 11층 이상의 층	기타 층
교회, 사찰, 4층 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정거장, 대합실,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사업장	피난구유도등·통로 유도표지 유도등	유도표지

나. 倉庫로서 別表 3에서 定하는 數量의 1千倍以上의 第1類·第2類·第4類 또는 第5類의 準危險物이나 別表 4에서 定하는 數量의 1천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다. 飛行機格納庫(泡消火設備에 한한다)

4. 구법과 동일하나 비행기 격납고에 소화설비로 포소화설비로 제한한 것이 특색이다.

5. 動力消防펌프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第2号 各目的 消防對象物 또는 그 部分

나. 第17條 第5号의 基準에 該當하는 建築物

6. 自動火災探知設備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延面積 1千平方미터以上인 것.

나. 各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別表 3에서 定하는 數量의 500倍以上의 準危險物 또는 別表 4에서 定하는 數量의 500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다. 各目 및 各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의 地下層·無窓層 또는 3層以上の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600平方미터以上인 것.

라. 消防對象物의 通信機器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500平方미터以上인 것.

6. 내화, 비내화 건물을 고려하지 않고 1000㎡로 고정시켰다.

7. 電氣火災警報機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延面積 1千平方미터以上の 倉庫(耐火構造 建築物을 除外한다)로서 壁·바닥 또는 反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不燃材料나 準不燃材料가 아닌 鐵網을 넣어 만든 構造의 것.

8. 自動火災速報設備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倉庫로서 그 바닥面積이 1千500平方미터以上인 것.

9. 非常警報設備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放送設備 및 非常벨 또는 放送設備 및 自動式사이렌 地下層을 除外한 層數가 11層以上이거나 地下層의 層數가 3層以上인 것.

나. 非常벨·自動式사이렌 또는 放送設備

各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收容人員이 100人 以上인 것. 다만, 地下層 또는 無窓層이 있는 경우에는 40人 이상인 것.

10. 避難口誘導燈·通路誘導燈은 地下層·無窓層 또는 11層以上の 層에, 誘導標識는 其他의 層에 設置하여야 한다.

11. 屋外消火栓設備·消火用水設備·連結送水管設備·連結撒水設備 및 非常콘센트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에 관하여는 第17條 第5号·第14号·第16号 내지 第18号의 規定을 各各 準用한다.

제20조(指定文化財) 別表 1의 指定文化財에는 消火器具를 設置하고, 延面積이 1千平方미터 以上인 것에는 屋外消火栓設備 또는 動力消防펌프設備를 設置하여야 한다.

구법에는 重要문화재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방지 설비가 해당 되었으나 삭제됨.

제21조(地下街) 別表 1의 地下街로서 消防施設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은 다음과 같다.

1. 消火器具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延面積 150平方미터以上인 것.

나. 各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別表 2에서 定하는 數量의 5分の1 以上の 危險物, 別表 3에서 定하는 數量 以上の 準危險物, 別表 4에서 定하는 數量以上の 特殊可燃物 또는 高压가스 安全管理法에서 規定하는 高压가스 中 40킬로그램 以上の 可燃性가스를 貯藏·取扱하는 것.

2. 屋内消火栓設備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延面積 600平方미터以上인 것.

나. 各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別表 3에서 定하는 數量의 750倍以上의 第1類·第2類 또는 第5類의 準危險物이나 別表 4에서 定하는 數量의 750倍 以上の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2. 구법에서는 500㎡로 내화인 경우 1000㎡까지 해당되나 신법에서는 600㎡로 고정시킨것은 오히려 강화된 느낌이다.

3. 스프링클러設備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延面積 1千平方미터 以上인 것.

나. 各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別表 3에서 定하는 數量의 1千倍以上의 第1類·第2類 또는 第5類의 準危險物이나 別表 4에서 定하는 數量의 1千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4. 自動火災探知設備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延面積 600平方미터 以上인 것.

나. 各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別表 3에서 定하는 數量의 500倍以上의 準危險物 또는 別表 4에서 定하는 數量의 500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4. 대통령제 9849(80. 4. 15)로 시행령 개정때 「귀하가」가 소방대상물로 규정되었으나 자동화재 방지설비의 대상에서는 누락 되었었으며 본 신법에 600㎡로 정하게 되었다.

5. 非常警報設備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放送設備 및 非常벨 또는 放送設備 및 自動式사이렌 層數가 3層以上이거나 收容人員이 800人 以上인 것.

나. 非常벨·自動式사이렌 또는 放送設備

各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收容人員이 40인 이상인 것.

6. 避難口誘導燈 및 通路誘導燈은 모든 地下街에 設置하여야 한다.

7. 排煙設備·連結送水管設備·非常콘센트設備 및 無線通信補助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延面積 1千平方미터以上인 것.

8. 連結撒水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延面積 700平方미터以上인 것.

9. 물噴霧等 消火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에 관하여는 第17條 第4号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22조(複合建築物) 別表 1의 複合建築物(第15條 但書에 該當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消防施設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은 各用途別 該當數値를 第17條 내지 第19條

에 規定된 用途別 基準數值로 나누어 얻은 수의 合計가 1 以上인 것으로 한다. 다만, 誘導燈과 誘導標識의 競合하는 層에 있어서는 誘導燈을 設置하여야 한다.

### 第3節 消防設施의 免除등

제23조 (消防設施의 免除) ① 屋內消火栓設備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또는 그 部分에 스프링클러設備·물 噴霧等 消火設備·屋外消火栓設備 또는 動力消防펌프設備을 內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當該設備의 有效範圍안 의 部分 (屋外消火栓設備 또는 動力消防펌프設備에 있어서는 1層 및 2層의 部分에 한한다) 에는 屋內消火栓設備을 設置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설비중 代치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옥내소화전 : 옥외소화전 (1, 2층에 한함) 동력소방펌프·스프링클러·물분무

② 스프링클러設備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또는 그 部分에 물 噴霧等 消火設備을 內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當該設備의 有效範圍안 의 部分에는 스프링클러設備을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스프링클러 : 물분무

③ 물 噴霧等 消火設備을 設置하여야 할 車庫·駐車場이나 別表3의 第1類·第2類 또는 第5類의 準危險物이나 別表4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消防對象物에 스프링클러設備을 內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當該設備의 有效範圍안 의 部分에는 물 噴霧等 消火設備을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차고나 주차장 : 스프링클러 (포말소화설비)

④ 屋外消火栓設備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에 스프링클러設備·물 噴霧等 消火設備 또는 動力消防펌프設備을 內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當該設備의 有效範圍안 의 部分에는 屋外消火栓設備을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옥외소화전 : 스프링클러·물분무소화설비·동력소방펌프

⑤ 動力消防펌프 設備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또는 그 部分에 屋內消火栓設備·屋外消火栓設備·스프링클러設備 또는 물 噴霧等 消火設備을 內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當該設備의 有效範圍안 의 部分에는 動力消防펌프設備을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自動火災探知設備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또는 그 部分 (內務部令으로 定하는 것을 除外한다) 에 스프링클러設備·물 噴霧消火設備 또는 泡消火設備 (表示溫度가 섭씨 75度以下이고 作動時間이 60초이내의 閉鎖型 레드를 設置한 것에 한한다) 를 內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當該設備의 有效範圍안 의 部分에는 自動火災探知設備을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소화설비

⑦ 非常벨·自動式사이렌 또는 放送設備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에 自動火災探知設備을 內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그 有效範圍안 의 部分에는 非常벨 또는 自動式 사이렌을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고, 放送設備 및 非常벨 또는 放送設備 및 自動式 사이렌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에 自動火災探知設備이나, 非常벨 또는 自動式 사이렌과 同等以上の 音響을 발하는 裝置를 附設한 放送設備을 內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그 有效範圍안 의 部分에는 非常벨이나 自動式 사이렌을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비상벨·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⑧ 避難器具 또는 誘導標識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에 있어서 그 位置·構造 또는 設備의 狀況에 따라 避難上 支障이 없다고 認定될 경우에는 內務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避難器具 또는 誘導標識를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아직 내무부령으로 정한바 없으므로 구법에 배제규정을 적용한다.

⑨ 連結撒水設備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에 送水口를 附設한 스프링클러設備나 물 噴霧等 消火設備을 內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當該設備의 有效範圍안 의 部分에는 連結撒水設備을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연결살수 :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⑩ 排煙設備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의 部分에 排煙上 有效한 窓 其他의 開口部가 있을 경우에는 內務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排煙設備을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배연상 유효한 개구부의 경우에도 구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消防設備適用의 特例) ① 別表1의 第2種場所중 內務部令이 定하는 工場에 대하여는 第18條 (消火設備에 한한다) 에 대한 特例를 內務部令으로 定할 수 있다. ② 消防署長은 消防對象物의 位置·構造 및 設備의 狀況을 判斷하여 消防設施을 設置하지 아니하더라도 火災의 發生 및 燐燒의 우려가 顯著하게 적거나 火災로 인한 被害를 最小限度로 沮止할 수 있다고 認定될 경우에는 第3章 第2節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소방법 시행규칙중 주요내용

제1조 (消防對象物의 檢査等) ① 消防法 (以下 “法”이라 한다) 第5條의 規定에 依한 消防檢査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 1. 建築物檢査

消防法施行令 (以下 “令”이라 한다) 別表1에 規定된 特殊場所의 構造·用途·消防設施·防炎処理物 其他 火災予防 및 鎮壓 対策에 必要한 事項의 檢査 건축물 검사시에 「진압대책에 필요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제2조 (消防檢査等の 回数) ① 第1條의 規定에 依한 消防檢査 또는 調査의 回數는 다음과 같다. 다만, 內務部長官이 따로 定하는 消防對象物에 對하여는 第1號의 建築物 檢査를 實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建築物檢査는 年1회



2. 危險物檢査는 年 1회

3. 水利調査는 月 1회

4. 地理調査는 年 2회 以上

② 同一構内に 2 以上の 消防対象物이 있는 境遇와 하나의 建築物이 2 以上の 用途로 使用되는 境遇에는 各 消防対象物에 대한 建築物 檢査는 이를 同時に 実施하여야 한다.

③ 建築物檢査와 危險物檢査의 対象이 되는 消防対象物에 있어서는 建築物 檢査와 危險物檢査를 同時に 実施하여야 한다.

④ 消防署長은 異常氣象時 또는 火災予防 및 鎮圧対策上 必要한 때에는 檢査의 対象을 指定하여 第 1項의 檢査回数에 불구하고 수시로 消防檢査를 実施할 수 있다. 건축물 조사는 年 2 회에서 1 회로 변경 되었고 소방검사로 같음할 수 있었던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 조항을 삭제 하였다.

제 3 조 (建築許可等の 同意) ① 令 第 4 條 第 1 項 第 3 号에 “危險物製造所等の 用途”라 함은 危險物製造所·一般取扱所 (危險物을 使用하여 製品을 生産·加工하기 爲하여 危險物을 取扱하는 取扱所에 한한다). 屋内貯藏所 및 注油取扱所の 用途를 말한다.

② 法 第 9 條 第 1 項의 規定에 依하여 建築許可庁이 消防署長에게 建築許可等の 同意를 要請할 때에는 다음 事項을 明示하여야 한다.

1. 建築主의 姓名·住所 (法人인 境遇에는 名稱·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및 그 代表者의 姓名)

2. 施工地

3. 工事의 種別 및 建築物의 用途

4. 許可年月日 (確認에 대한 同意인 境遇에 한한다)

5. 着工予定日 및 竣工予定日 (許可에 對한 同意인 境遇에 한한다)

6. 消防施設의 示方書 및 設計圖書 (許可에 對한 同意인 境遇에 한한다)

구법의 조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 5 조 (建築許可等の 同意要請) 法 第 9 條 第 1 項의 規定에 依하여 建築許可庁이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 에게 建築許可等の 同意를 要請할 때에는 다음 各号의 事項을 明示하여야 한다.

1. 建築主의 住所·姓名 (法人인 경우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와 名稱 및 그 代表者의 姓名)

2. 施工地

3. 工事 種別 및 建築物의 用途

4. 許可年月日 (竣工 同意인 경우에 限한다.)

5. 着工予定日 및 竣工予定日

6. 消防施設의 示方書 및 設計圖書

서울특별시의 경우 별도로 소방본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22 조 (消防施設의 施工申告) ① 法 第 32 條 第 1 項의 規定에 依한 消防施設의 施工申告는 別紙 第 11 号 書式에 依한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書에는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에 關한 示方書 및 設計圖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③ 令 第 27 條 各号의 規定에 依한 消防施設의 施工에 있어서는 施工申告를 必要로 하지 아니한다.

소방시설의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는 소방설비업자의 의무지만 1차적으로 건축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제 23 조 (消防施設의 完工檢査) ① 法 第 32 條 第 2 項의 規定에 依하여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의 完工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別紙 第 12 号 書式에 依한 完工 檢査申請書를 消防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이 境遇 法 第 4 項의 規定에 依하여 建築物의 確認에 對한 同意에 같은하는 完工檢査의 申請은 建築主가 할 수 있다.

② 消防署長은 第 1 項의 規定에 依한 完工檢査 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當該 施設이 消防施設基準에 適合한지의 与否를 檢査하여야 한다.

③ 消防署長은 第 2 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 한 結果 當該 施設이 消防施設基準에 適合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別紙 第 13 号 書式에 依한 完工 檢査畢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이 境遇 法 第 9 條 第 4 項의 規定에 依하여 建築物의 確認에 對한 同意에 같은하는 完工檢査에 있어서 하나의 建築物에 數個의 消防施設을 하여 施工者가 2 人 以上인 境遇에는 各 施工者에게 完工檢査畢證을 交付하는 外에 建築主에게 各 消防施設에 對한 完工檢査事項을 記載한 完工檢査畢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④ 消防署長은 第 2 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結果 當該施設이 消防施設基準에 不適合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事由를 明示하여 補完 指示를 할 수 있다.

⑤ 令 第 27 條 各号의 規定에 依한 消防施設의 施工에 있어서는 完工檢査를 必要로 하지 아니한다.

지금까지 살펴본바 대로 금번 소방법 개정에는 대체적으로 설비적용만을 규정 하였을 뿐임으로 기술수준의 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까지는 신·구 소방법을 병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방법 적용에 애로가 많을줄 안다.